

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 안 설 명

정진철 의원

안녕하십니까?

존경하는 우리 교통위원회 선배, 동료의원들 앞에서 “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”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.

동 개정조례안은 보조금의 재정지원을 받은 마을버스 사업자에 한해 서울시와 협의를 통해 독립적인 외부의 감사인에게 회계 감사를 받도록 의무화하여 마을버스의 건전운행을 도모하고 이용시민에 대한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.

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개정안을 참조하여 주시고, 동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.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